# 교원보수규정

시행일: 2023.12.01

### 제1장 총칙

- 제1조(목적) 본 규정은 경희대학교(이하 "본교"라 한다)에 재직하는 교원의 보수와 강의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적용범위) 본교 교원의 보수와 강의료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본 규정에 의한다.
- 제3조(용어의 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  - 1. '연봉'이라 함은 교원이 1년 동안 받을 수있는 계약총액을 말한다.
  - 2. '연봉월액'이라 함은 연봉을 12개월로 균분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.
  - 3. '보수'라 함은 연봉월액에 보직수당 및 기타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.
  - 4. '기타수당'이라 함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연봉월액을 제외한 각종 수당을 말한다.
  - 5. '보수 일할계산'이라 함은 그 달의 보수를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.
  - 6. '초임급'이라 함은 임용될 때에 최초로 확정될 연봉액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.
  - 7. '초과강의'라 함은 교원이 책임강의시간 외에 담당한 강의를 말한다.
  - 8. '책임강의시간'이라 함은 학위과정에서 교원이 학년도별로 강의하여야 하는 의무시간을 말한다. 단 비전임교원 및 강사는 학기별로 강의하여야 하는 의무시간을 말한다.

#### 제2장 보수

- 제4조(보수 및 강의료) ① 교원의 차기학년도 보수 및 강의료는 기획조정처장이 총장의 승인을 얻어 별도로 정한다.
  - ② 대학원 비학위 및 특별과정 강의료는 기획조정처장이 행·재정부총장의 승인을 얻어 기관별로 집행한다.
- 제5조(보수계산) ① 교원의 보수는 월 또는 회계연도를 단위로 계산한다.
  - ② 신규임용, 승진, 보직의 임면, 직위해제, 감봉, 정직, 파면·해임, 파견, 휴직, 복직 또는 교원이 월중에 임면될 경우에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보수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.
  - ③ 교원이 월중에 사직할 경우 당월 보수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. 다만, 전임교원의 근속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당월 보수의 전액을 지급한다.
- 제6조(초임급확정) 제6조(초임급확정) 전임교원 및 비전임교원의 초임급은 관련규정 및 시행세칙에 의거하여 책정한다.
- 제7조(연구보조비) ① 교원의 보수는 제4조에 의해 지급하되 그 일부를 연구보조비로 지급할 수 있다.
  - ② 연구보조비는 교비로 조성한다.
  - ③ 연구보조비의 지급범위, 금액, 기타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.

- 제8조(보수지급일) 보수 및 강의료(특별강의료 제외)는 매월 25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고 25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을 보수지급일로 한다. 다만,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총장은 교원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보수지급일을 달리 정할 수 있다.
- 제9조(휴직기간 중의 보수) 휴직 중인 전임교원의 보수는 「학교법인경희학원정관」제42조 및 「교원인사 기본규정」제16조에 따라 지급한다.
- 제10조(직위해제기간 중의 보수) 직위해제기간중의 보수는 「교원인사기본규정」 제20조 제3항에 따라 지급한다.
- 제11조(감액지급대상) 당월 보수의 감액지급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.
  - 1. 전월 기준 6시간 이상 10시간 이하로 결강을 하고 보강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보수의 10% 감액, 11시간 이상 20시간 이하로 결강하고 보강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25% 감액, 21시간 이상 결강한 자는 50% 감액지급 한다.
  - 2. 해외여행에 있어 귀국하지 아니한 채 귀국 약정일로부터 8일 이상 14일 이하로 경과된 자는 보수의 25% 감액, 15일 이상 29일 이하로 경과된 자는 50% 감액, 30일 이상 경과된 자는 그 기간 동안 보수 일할계산한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다.
  - 3. 정직 처분 기간 동안에는 보수의 전액을 감하며, 감봉 처분 기간 동안에는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.
  - 4. 계약서에 명시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수를 감액 지급할 수 있다.

## 제3장 수당

- 제12조(보직수당) ① 제 보직 수당은 기획조정처장이 총장의 승인을 얻어 별도로 정한 「교원보직수당 지급표」에 따라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.
  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원보직수당 지급표에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교무처장이 기획조정처장의 검토를 받아 총장의 승인을 얻어 지급한다.
- 제13조(겸직자의 수당) ① 교원이 본직 이외의 다른 직무를 겸직하는 경우에는 업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겸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  - ② 겸직수당의 지급여부 및 지급액은 기획조정처장이 총장의 승인을 얻어 결정한다.
- 제14조(특수직수당) 특별히 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있는 직무에 대하여는 기획조정처장이 총장의 승인을 얻어 특수직 수당을 별도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.

#### 제4장 강의 및 강의료

- 제15조(책임강의시간) ① 정년트랙 전임교원의 연간 책임강의시간은 학기별 주당 강의시간을 합산한 것을 의미하며,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개별계약으로 달리 정한 때에는 그에 따른다.
  - 1. 정년트랙: 15시간
  - 2. 비정년트랙: 24시간
  - ② 특수대학원 소속 교원의 책임강의시간은 특수대학원 강의시간을 포함하며, 책임강의시간 충족여부 판정시에는 특수대학원 야간강의에 대해 담당 강의시간의 1.5배로 계산할 수 있다.
  - ③ 책임강의시간 인정은 수업형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. 단, 실기강좌는 예ㆍ체능계열에 한하며, 설계강좌는 공학인증 관련학과에 한하여 인정한다.

- 1. 이론 1시간: 1시간
- 2. 실험/실습 1시간: 0.5시간
- 3. 실기 1시간: 0.8시간
- 4. 설계 1시간: 1시간 이내(학점 범위내)
- ④ 보직임면, 연구년, 파견, 1학기 퇴직, 2학기 임용, 휴·복직 등 기타 사유로 1개 학기만 강의하는 경우학년도별 책임강의시간의 1/2을 당해학기 책임강의시간으로 한다.
- ⑤ 학기 개시일 이후 휴직하거나 복직하는 경우 당해 학기의 책임강의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하여 적용하다.
- 1. 휴직: 학년도별 책임강의시간의 1/2×(휴직일 전일기준 당해 학기일수/당해 학기 총일수)
- 2. 복직: 학년도별 책임강의시간의 1/2×(복직일 기준 당해 학기 잔여일수/당해 학기 총일수)
- ⑥ 학기 중 직위해제, 정직처분으로 수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직위해제, 정직처분기간 중 책임강의시간을 감면하고, 해당 학기의 책임강의시간은 해당 학기 총일수에서 처분기간을 제외한 일수에 해당하는 기간에 대하여 부여하며 다음과 같이 산정하여 적용한다.
- -학년도별 책임강의시간의 1/2×{(당해 학기 총일수-처분기간)/당해 학기 총일수}
- ① 학기별 강의는 책임강의시간을 균등 배분하여 담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, 학기별 최소 1개 강좌 이상의 강의를 담당하여야 한다. 단, 책임강의시간이 6시간 미만인 경우는 학기별 최소 1개 이상 강의 의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
- ⑧ 책임강의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교원에게는 별도의 지침을 정하여 보수를 감액 지급한다. 단, 본인의 선택에 따라 미충족분을 직후 학년도에 보충하게 할 수 있다.
- 제16조(책임강의시간의 조정) ① 총장은 교무위원 등 보직교원의 책임강의시간을 별도 지침을 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.
  - ② 제1항의 보직교원 이외에도 업무부담 및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책임강의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의 조정은 교무처장이 총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.
  - ③ 교원업적평가 결과에 따라 교원의 책임강의시간을 감면하거나 추가 부여할 수 있다.
  - ④ 대형연구과제 연구책임자 등 본교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특별히 인정되는 경우 또는 연구비 지원 기관에서 책임강의시간 조정을 요구할 경우 해당 연구 수행기간 동안 책임강의시간을 감면할 수 있다.
  - ⑤ 신규임용 교원에 대하여 최대 2년간 책임강의시간을 감면할 수 있다.
  - ⑥ 여성교원이 임신할 경우 출산학기 또는 출산직전(후) 학기에 책임강의시간을 감면할 수 있다.
  - ⑦ 책임강의시간의 조정, 감면 및 적용 등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.
- 제17조(초과강의료) ① 교원이 책임강의시간을 초과하여 강의를 담당하는 경우, 초과시간에 대하여 초과강의료를 매년 10월에 일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단, 교무위원은 초과강의료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다.
  - ② 총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별도로 정한다.
- 제18조(강의료 계산) ① 강의료는 주간 단위로 계산한다. 다만, 학기말 종강 등의 사유로 1주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강의한 시간 수에 따라 지급한다.
  - ② 특별강의료는 별도지침을 정하여 지급한다.
  - ③ 필요한 경우에는 강의료를 월정액으로 책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.
- 제19조(강의료 지급의 특례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강의를 실시하지 아니한 시간에 대하여 강의료를 지급할 수 있다.
  - 1. 해당과목 시험기간

- 2. 학교 또는 국가적 행사,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한 휴업
- 제20조(면직 또는 징계처분 등이 취소된 교원의 보수 지급) ① 교원에게 행한 징계처분·면직 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(징계의결요구에 따른 직위해제 처분을 제외한다)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는 복귀일 또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한 당시의 보수전액 또는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. 이 경우 재징계절차에 의하여 징계처분한 경우에는 재징계 처분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되 재징계 처분 전의 징계처분기간에 대하여는 보수의 전액 또는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.
  - ② 징계의결이 요구되어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자가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당해 징계의결 요구가 기각되거나 그 직위해제 처분 또는 직위해제 처분의 사유가 된 징계처분이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의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에는 직위해제 처분일을 기준으로 한 보수액과 그 직위해제 처분 기간 중에 지급한 보수액과의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.

제21조(연봉계약체결시기) 연봉은 매년 2월 말일까지 차기 학년도 연봉 체결을 원칙으로 한다.

제22조(보칙) 본 규정이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교무처장이 총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.

부 칙

- 1. 본 규정은 1985.3.1부터 시행한다.
- 2. 본 규정은 1986.3.1부터 시행한다.
- 3. 본 규정은 1986.6.23부터 시행한다.
- 4. 본 규정은 1986.12.1부터 개정시행한다.
- 5. 본 규정은 1987.9.1부터 시행한다.
- 6. 본 규정은 1989.3.1부터 시행한다.
- 7. 본 규정은 1992.9.1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본 규정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 본 규정은 2001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.
- ② (다른 규정의 폐지) 교직원보수규정은 본 규정 및 직원보수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.

부 칙

본 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브 츠

- 1.(시행일)본 규정은 200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2.(경과규정) 본 규정 제 19조 제1항의 초과강의수당 지급기준은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.

- 1.(시행일)본 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2.(책임강의시간에 관한 경과조치) 특수대학원인 경우 제16조(책임강의시간) 제1항의 개정된 내용은 2009학년도부터 적용한다.

부 칙 본 규정은 2009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본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본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본 규정은 2020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본 규정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본 규정은 202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